

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사업연도		연결자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		
		연결모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		
연결전 연결연도소득 계산	각 사업연도 소득	①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					
	소득조정 금액	② 익 금 산 입					
		③ 손 금 산 입					
	④ 차 가 감		소득금액 (①+②-③)				
	⑤ 기 부 금		손금산입 한도 초과액				
	⑥ 기 부 금		손금산입한도 초과 이월 액 손 금 산 입				
	⑦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(④+⑤-⑥)						
연결법인별 조정항목 연결 제거	조정항목	⑧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					
	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						
	⑩ 기 부 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						
	⑪ 기 부 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						
연결집단내 연결	연결집단내 연결	⑫ 차 가 감 계 (⑦+ ⑧- ⑨- ⑩+ ⑪)					
	⑬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						
	⑭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 손금불산입						
	⑮-1 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						
	⑮-2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						
	⑯ 연결법인간 자산 양 도 소 득		⑮익 금 불 산 입 ⑮익 금 산 입				
	⑰ 연결법인간 자산 양 도 손 실		⑯손 금 불 산 입 ⑯손 금 산 입				
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조정항목의	연결법인별 배분액	⑲ 차 가 감 계 [⑫-⑬+⑭-(⑮-1)+(⑮-2)-⑯+⑰+⑱-⑲]					
	⑳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						
	㉑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						
	㉒ 기 부 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(⑲-⑳+㉑)						
	㉓ 연결법인의 기 부 금 손금불산입						
	㉔ 연결법인의 기 부 금 손금산입한 도 초 과 이 월 액 손 금 산 입						
	㉕ 연결수정소득금액 (㉒+㉓-㉔)						
연출세액의 개별귀속 및	연출세액의 개별귀속 및	㉖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손금불산입					
	㉗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)(㉒+㉒)						
	㉘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)						
	㉙ 연 결 이 월 결 손 금 공 제						
	㉚ 비 과 세 소 득						
	㉛ 소 득 공 제 액						
납부할 세액 계산	기 납 부 세 액	⑳ 과 세 표 준 개 별 귀 속 액 (㉒-㉓-㉔-㉕)					
		㉖ 연 결 세 율					
		㉗ 연 결 법 인 별 산 출 세 액					
		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					
		㉙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					
		㉚ 가 산 세 액					
		㉛ 가 감 계 (㉗-㉘-㉙+㉚)					
	토지 양 도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	양 도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	㉜ 중 간 예 납 세 액				
			㉝ 원 천 납 부 세 액				
			㉞ () 세 액				
㉟ 소 계 (㉜+㉝+㉞)							
㊱ 신 고 납 부 전 가 산 세 액							
㊲ 합 계 (㉟+㊱)							
㊳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							
㊴ 차 감 납 부 할 세 액 (㊲-㊳)							
미 환 류 소 득 법 인 세	미 환 류 소 득 법 인 세	㊵ 등 기 자 산					
		㊶ 미 등 기 자 산					
		㊷ 비 과 세 소 득					
		㊸ 과 세 표 준 (㊵+㊶-㊷)					
		㊹ 세 율					
		㊺ 산 출 세 액					
		㊻ 감 면 세 액					
㊼ 공 제 세 액							
㊽ 가 산 세 액							
㊾ 가 감 계 (㊺-㊻-㊼+㊽)							
㊿ 기 납 부 세 액							
㊿ 차 감 납 부 할 세 액 (㊾-㊿)							
㊿ 과세대상 미환류소득							
㊿ 세 율							
㊿ 산 출 세 액							
㊿ 가 산 세 액							
㊿ 이 자 상 당 액							
㊿ 납부할세액(㊿+㊿+㊿)							
㊿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(㊿+㊿+㊿)							
㊿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							
㊿ 납 부 (환 금) 할 세 액 (㊿-㊿)							

작성 방법

*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
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(별지 제76호의7서식)의 각 항목 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
<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>

1. ㉔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: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4호서식)의 ㉔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적습니다. 다만, 2017.1.1.부터 2017.12.31.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㉔금액에 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2호의2서식)의 ㉔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2. ㉕ 가산세액란: 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9호서식)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㉕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3. ㉖ 이자상당액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3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[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]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